

기준일 공고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2년 10월 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식회사 한텍과의 소규모 주식교환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21일

(주) 후성 대표이사 허국

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현대기아로 72-37